

1999. 12. 24.(금)

제55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總務委員會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 12. 14. 제천시장
- 나. 회부일자 : 1999. 12. 14.
- 다. 상정일자 : 1999. 12. 20. (제50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5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및 임용절차등 필요 사항을 규정한 동조례의 내용중 별정직 읍면동장의 직위가 폐지되고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 근무상환 연령등 인사관련제도의 미비사항을 일부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별정직 읍면동장의 직위폐지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수정
- 임용권의 소속공무원의장 및 지방의회로의 위임사항 삽입
- 단위기관내 전보규정을 단위기관내 동질적 업무직위로의 전보 명시
-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단서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태훈)

○ 법규적검토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며 제4항의 규정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법규적 저촉사항이 없다 할 것임.

○ 행정적 검토

- 동 조례는 '99. 11. 19. 충북도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되어 '99. 12. 13 제천시 조례 규칙 심의회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된 사항임으로 절차상 행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질의답변 없음.

5. 토론요지

- 토론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심사보고 블임서류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끝.